

사업명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31,493	36,068	36,068	36,823	36,823	755	2.1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8,619	9,656	9,656	8,910	8,910	△746	△7.7

4.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30호)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7001-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0,521	11,806	11,806	11,560	11,560	△246	△2.1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357	2,508	2,508	2,807	2,807	299	11.9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1,027	1,128	1,128	1,140	1,140	12	1.1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4430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 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595	663	663	661	661	△2	△0.3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행정실무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 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4,886	5,348	5,348	6,159	6,159	811	15.2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770호)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1,200	1,225	1,225	1,253	1,253	28	2.3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국무총리비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30617호)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052	1,182	1,182	1,229	1,229	47	4.0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미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57	188	188	177	177	△11	△5.9

4.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기	주요내용
정기점검	매월	▪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각 부처)
	분기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등 점검
	매년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수시점검		▪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

사업명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정운영 정보화 (정보화)	954	965	965	981	981	16	1.7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실시간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국정운영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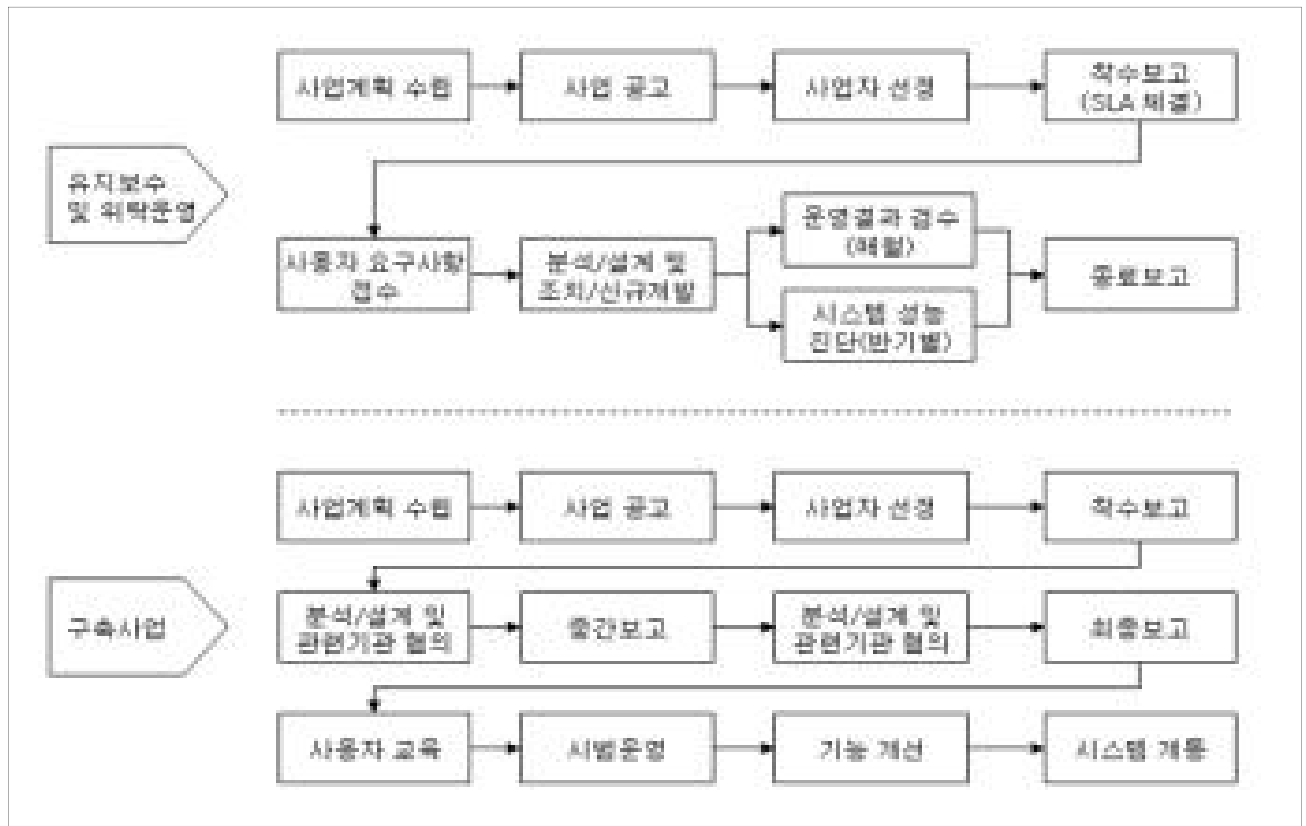
○ 추진경위

- '06년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07년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쏘부처 온-나라시스템 연계
- '07년 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년 대통령훈령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 '07~'08년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9년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12년 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관 1, 2차 사업,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3~'14년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16년 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18년 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20년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및 차세대 EDMS 개발
- '21년 액티브X 대체에 따른 응용S/W 개선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026	3,353	3,353	3,242	3,242	△111	△3.3

4. 사업목적

- (정평위 운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평가포상금)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 ② 추진경위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 국정과제·일자리창출·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일자리 창출과 국정과제 부문 통합, 정부혁신 신설 등 특정평가체계 개편('18.4월)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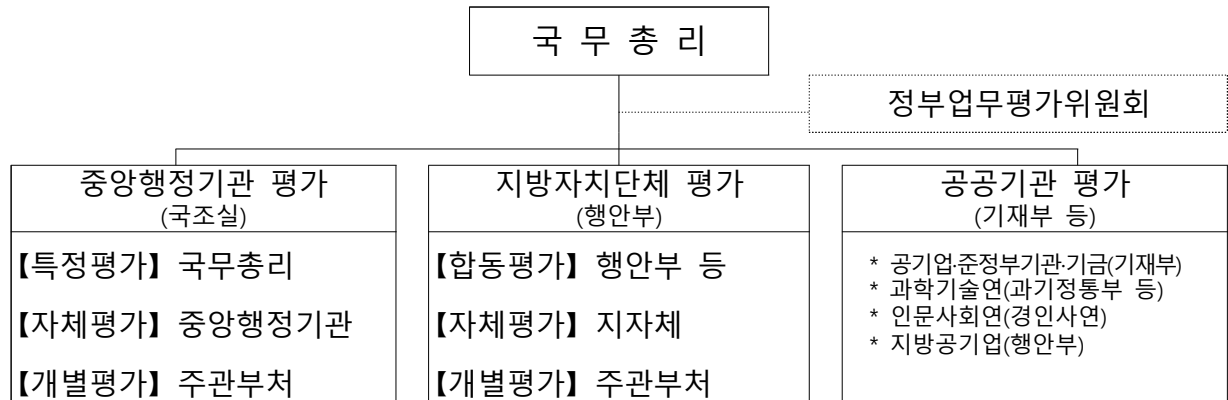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20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시행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평가주관기관이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추진성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합동평가
- 지자체 장이 고유사무 전반을 자체평가

○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기업, 출연연 등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사업명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7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84	809	809	1,721	1,721	912	112.7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성과관리 및 업무 평가 자료의 온라인화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 자료분석·지식정보화를 위해 평가자료 DB의 구축 및 전자통합평가시스템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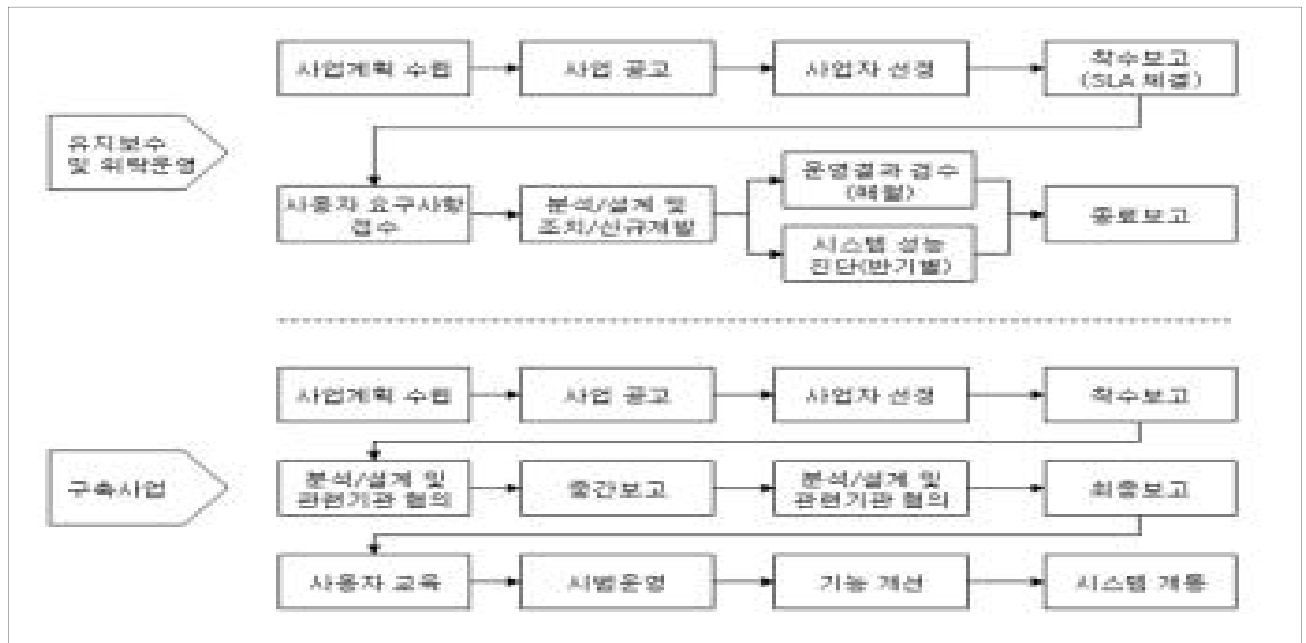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3년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 e-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05.6~10)
- '06~'09년 e-IPSES 2~5차 정보화사업
- '10년 e-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13년 e-IPSES 2단계 1~3차 고도화사업
- '14~'15년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국정과제기반의 시스템 개편
- '16~'17년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액티브X 제거 등 시스템 고도화
- '18~'20년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및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 '21년 정부업무평가포털 구축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자체 성과관리 지원,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공무원, 민간 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공공기관 갈등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공기관 갈등관리	496	455	455	404	404	△ 51	△ 11.2

4. 사업목적

- (갈등관리 운영지원)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 ▲정부업무평가(갈등관리 부문) 실시, ▲갈등관리 워크숍·현장점검 등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
 - (갈등관리연구)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 분석 또는 국가 차원의 전략 등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
 - (교육 및 인프라 구축) '갈등 규정'에 의거,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며, ▲맞춤형 컨설팅 ▲기본교육 ▲DB 운영·관리 등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제고 도모
-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등 3곳 지정·운영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1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숙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
- 대통령,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지시('06.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연장(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2.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22.12)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입법 추진('20.12, 국회 제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 · 공공기관 · 지자체 갈등관리 담당자,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보조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90	10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 운영)
	보조	방통대 공존협력 연구소	81	100	
	보조	한양대 갈등문제 연구소	81	100	

7. 사업 집행절차

○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민간경상보조)

▲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 기관 선정(국조실) → ▲사업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사업계획 승인(국조실) → ▲사업추진(수행기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중간점검(국조실)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국조실) → ▲사업성과 차년도 사업에 반영(국조실)

사업명
포항지진 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운영 (7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	7,778	13,734	13,734	3,097	3,097	△10,637	△77.5

4. 사업목적

-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두차례('17.11, '18.2)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 '20.4.1 시행)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및 '포항지진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20.4~5월)
- 동 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 진상조사, 피해구제 손해사정,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연구용역,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주민설명회 등 추진
 - * 진상조사위원회는 '21.7월 활동 종료하여 관련 업무 종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 진상조사위원회는 '21.7월 활동 종료하여 관련 업무 종료
- 사업 수혜자 : 포항지진 피해자 및 포항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피해구제심의위 피해구제 심의절차>	
신청·접수 단계 (포항시)	신청서 제출 : 현장 34개소(읍·면·동 29개소, 거점 접수처 5개소), 포항시 홈페이지(온라인, 모바일) 등
	접 수(포항시 위임) : 신청서 검토 및 서류 보완(1개월 이내) → 완결 전체자료 스캔 → 자료 송부(조사 위탁기관) ※ 자료 송부 시 NDMS 기 등록 여부, 기 지급금 내역 확인·정리 후 함께 송부
조사·평가 단계 (위탁기관)	사전조사 : 구비서류 검토 후 서류 분류·보완 ※ 서류 미비 건은 포항시 통보 및 보완 요청, 신청인에게 안내 병행
	본조사 : 피해자 면담 → 현장실측 → 사진촬영 → 기타 자료수집 → 내부집기류 등 조사 → 물가조사
	피해액 및 지원금 산정 : 피해액 산출 → 기 지급금 내역 확인 → 조사·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지원금 결정 단계 (위원회)	조사·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사업명
대테러센터 운영 (7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센터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대테러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대테러센터 운영	773	853	853	881	881	28	3.3

4.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 활동 추진*

*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 설치·운영('16.6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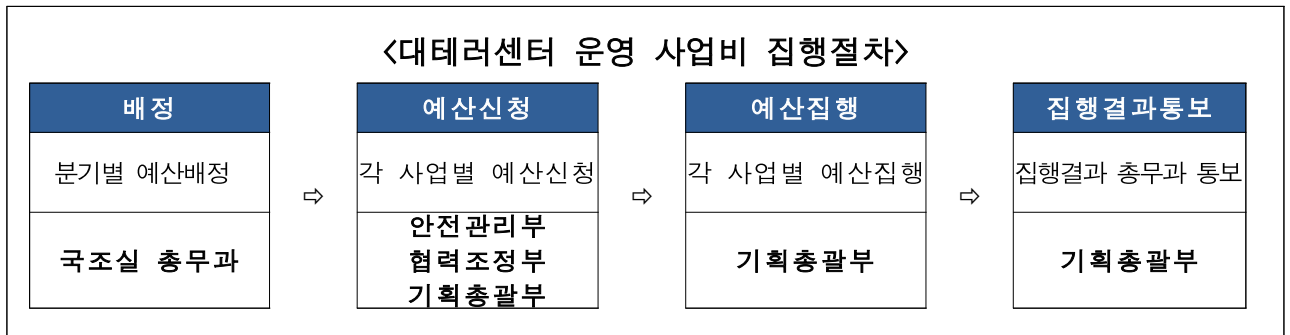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인권보호관 지원 (70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인권보호관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296	319	319	373	373	54	16.9

4. 사업목적

-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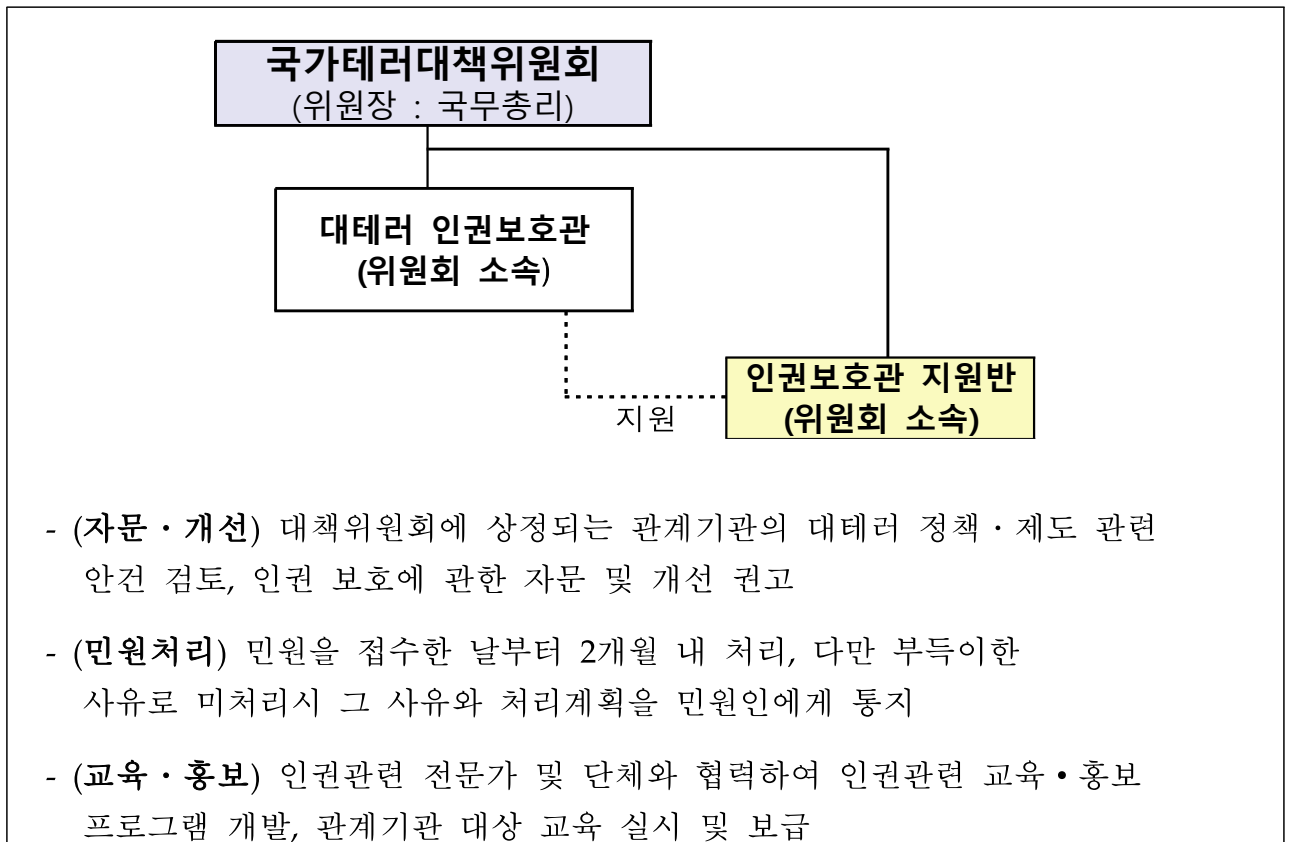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	603	718	718	551	551	△167	△23.3

4.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 ② 추진경위

-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관리를 위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17.12~'18.5월, 국회 미세먼지특위)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및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 발표
- 미세먼지특별법('18.8.14 공표, '19.2.15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조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2.15)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2.15~'24.2.14 (5년 한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44	1,035	1,035	1,059	1,059	24	2.3

4. 사업목적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추가·신설 억제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를 둔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현 정부 출범 이후 '21.12월말 기준, 총 96회 본회의 및 총 16회 분과위원회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해당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off-line) - 규제심사 대상여부, 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시 협의된 작성유형으로 작성 ※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규제심사 대상여부판단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영향분석 유형(표준/간이형) 결정 /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예비검토 ※ 심사 제외규정(법 제3조 제2항) : 심사종결
입법예고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규제연구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비용 등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제출 ※ 비용편익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규제연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 표준 또는 간편절차, 비용상 중요여부 확정 ※ 폐지·완화규제 : 비용분석·검증·적립(Banking)만 실시
비용분석위원회 심의	비용분석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절차(간편절차 제외) 또는 비용상 중요규제(직간접 비용 100억원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는 비용분석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검증의견 종합	규제심사관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기타 검토의견 종합 · 종합된 검토의견 소관부처 전달
자체심사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규제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규제개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위원회 예비심사 → 본심사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의결된 경우 본심사 제외

사업명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규제개혁 정보화	1,240	604	604	899	899	295	48.8

4. 사업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 제·개정시 실시하고 있는 규제심사 지원,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되는 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민에게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규제정보포털 구축·운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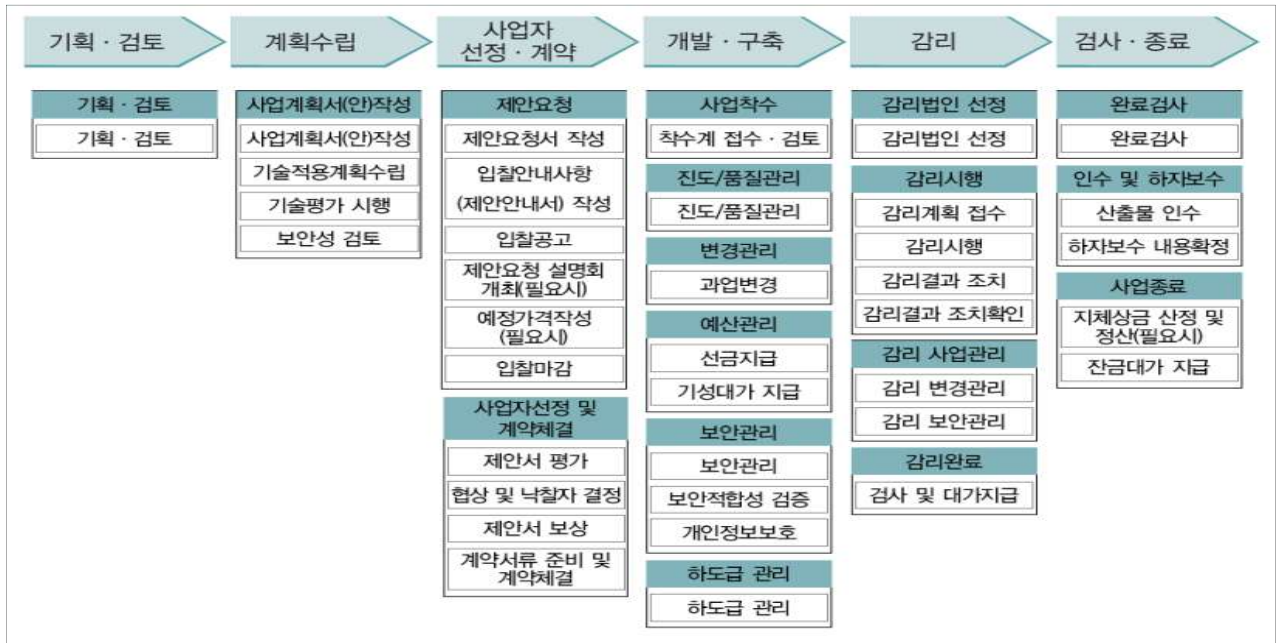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08.4.4)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8.7~'08.11)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 ('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16.7~'16.10)
- 규제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사업 ('20.5~'20.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70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01	313	313	314	314	1	0.3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부회장), 국조실(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건의·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결과 통지 |
|---|

사업명
현안과제 추진 지원 (70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등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현안과제 추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현안과제 추진 지원	1,204	1,364	1,364	810	810	△554	△40.6

4. 사업목적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지원 >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사회적 갈등관리

< 세월호지원단 운영 >

- '15.3월 제정·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과 세월호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세월호지원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 * 동 내역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내에 사무국(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위원회 운영경비, 식품안전정책 수립지원 연구조사 등에 필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지원
 -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등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 동 내역사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 수준 감소 목표로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지원 >

-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08.9)
 - * 제명 변경('22.1월) : 주한미군기지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추진경위
 -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정책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결정('08.4, 청와대 안보정책실무 조정회의)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정 및 지원단 설치('08.9)

< 세월호지원단 운영 >

- 법령상 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추진경위
 - '15.1.2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정('15.3.29 시행)
 - '15. 3,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지원조직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발족
 - ~현재, 18개 피해지원 대책*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지원 중
 - * 세월호피해지원법상 18개 대책 중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등 8개 대책 완료, 피해지역(안산, 진도) 경제활성화,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제8조, 제11조~제13조, 시행령 제7조
- 추진경위 :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11년) 수립
 -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년) 수립
 -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년) 수립
 - '17.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
 - '18.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년) 수립
 - '21. 2월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년) 수립
 - '09~'21년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 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5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부가세 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
도개선과제 국회 제출(제4단계 제도개선 2,152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
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0.11월 :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10.5~11월, 법제연구원), 헬스케어
타운 용지보상('10.10)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10.11)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
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5월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11.5~12)
- '11.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1.12월 :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
- '12. 3월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 '12.10월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약 1조원)체결 및 착공
- '12.10월 :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정상 개교
- '13. 3월 :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2015→'2021 / 6년 연장)
- '13. 9월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A·R·H지구 약 1조1천억원)체결
- '13.1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2월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22~6.1일)
- '16.12월 :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8~6.6일)

- '17. 8월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7.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2.28)
- '18.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14.~5.26일)
- '18. 2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계획 수립
- '18. 7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7.5-6)
- '18. 11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토론 워크숍
- '19. 2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
- '19.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4~6.12일)
- '19. 6월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착수
- '19. 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 '20.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수립(제주지원위 심의)
- '20. 5월 :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착공('20.5)
- '20. 7~12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조정
- '21.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월~5월)
- '21. 3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21. 11월 : 7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 운영 >

-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85호, '21.6.16 일부개정)
-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18.1.10, 신년사)에 따라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소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 ('18.1.23, 국무회의)

*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음('18.1.10, 신년사)

*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가 관장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 화재 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주시기 바람 ('18.1.29, 수석보좌관회의)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자살예방)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연령·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책임성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산업안전) △발주자 책임 부여 및 원청 역할 확대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등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신설('18.5.2)

※ 2개 팀(총괄기획팀, 교통·산업안전팀) 15인(단장 포함)으로 구성·운영중

6.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지원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6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세월호지원단 운영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4.16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피해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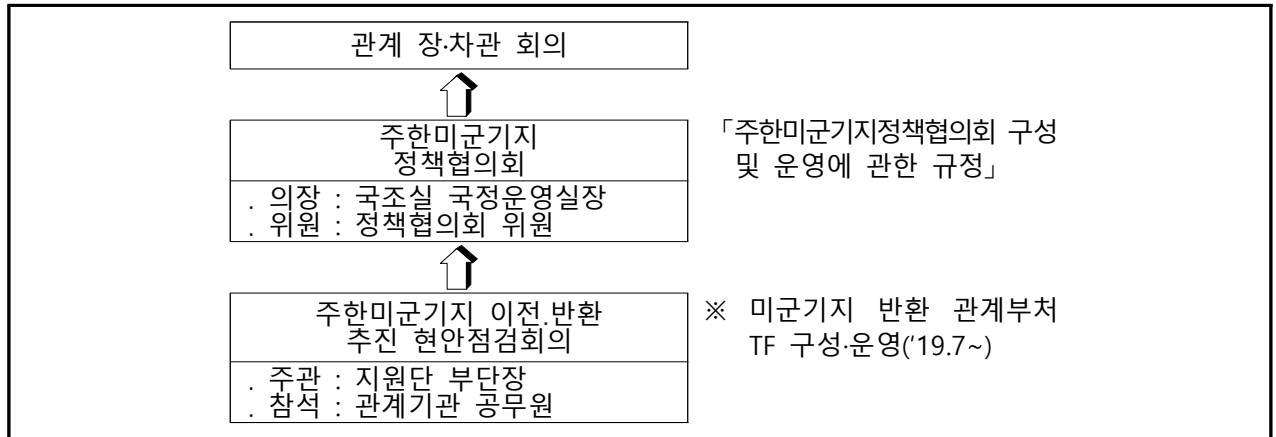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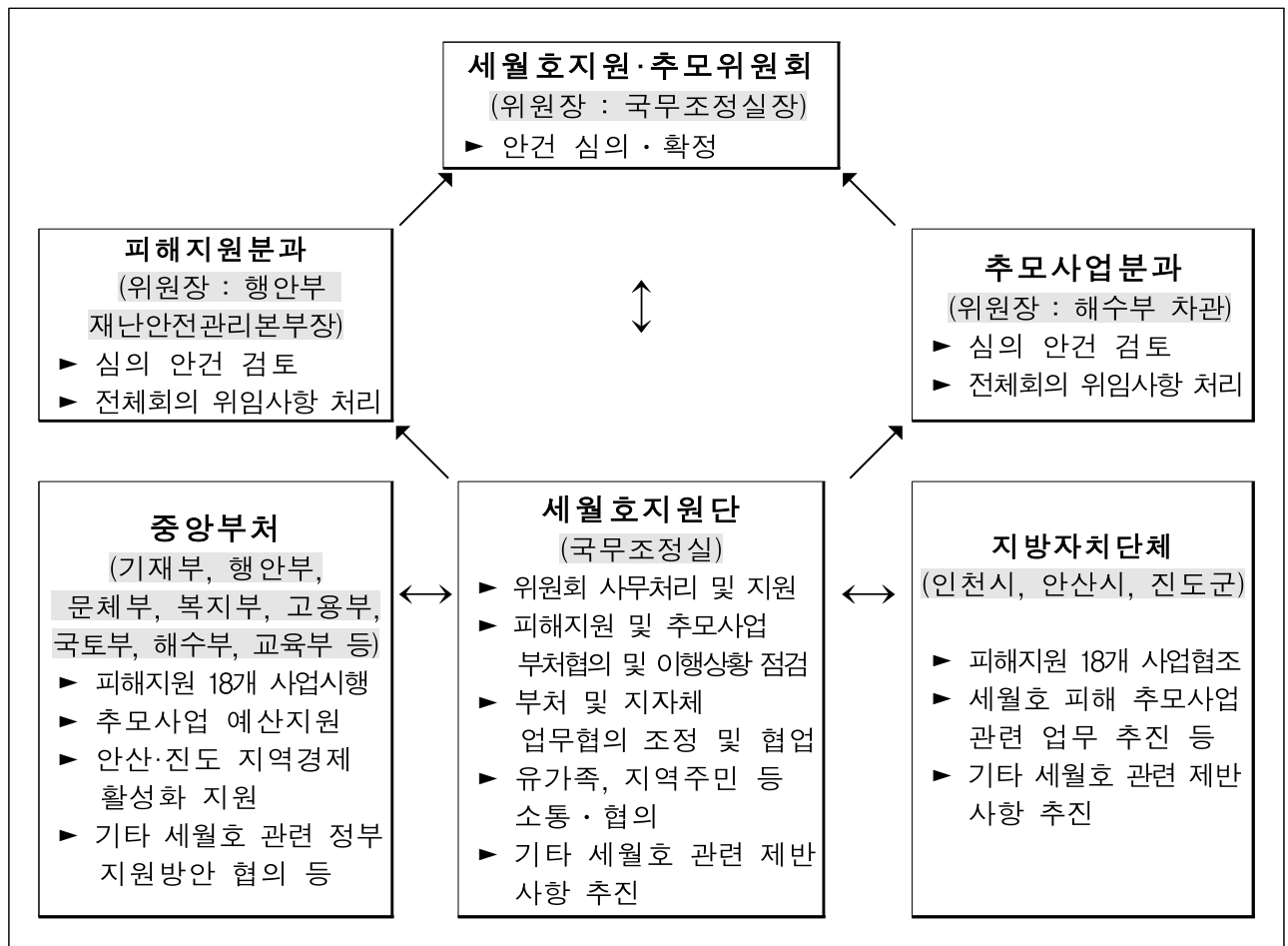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23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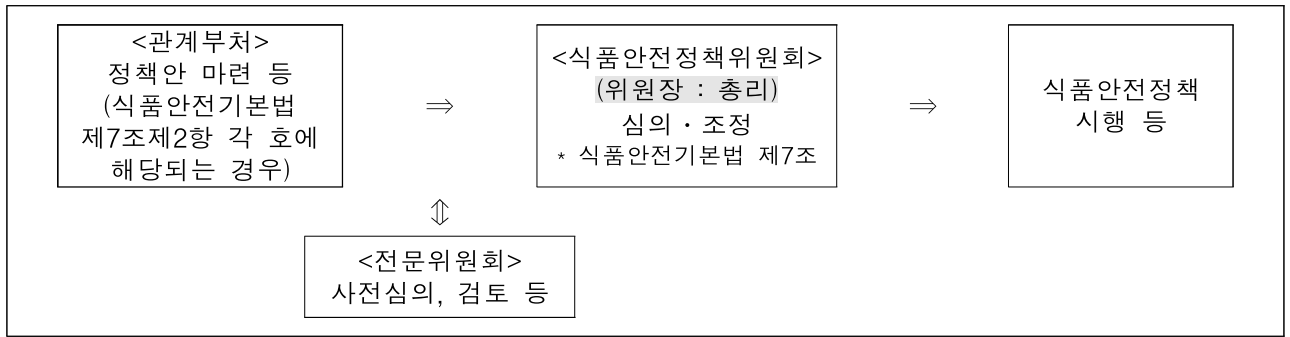
<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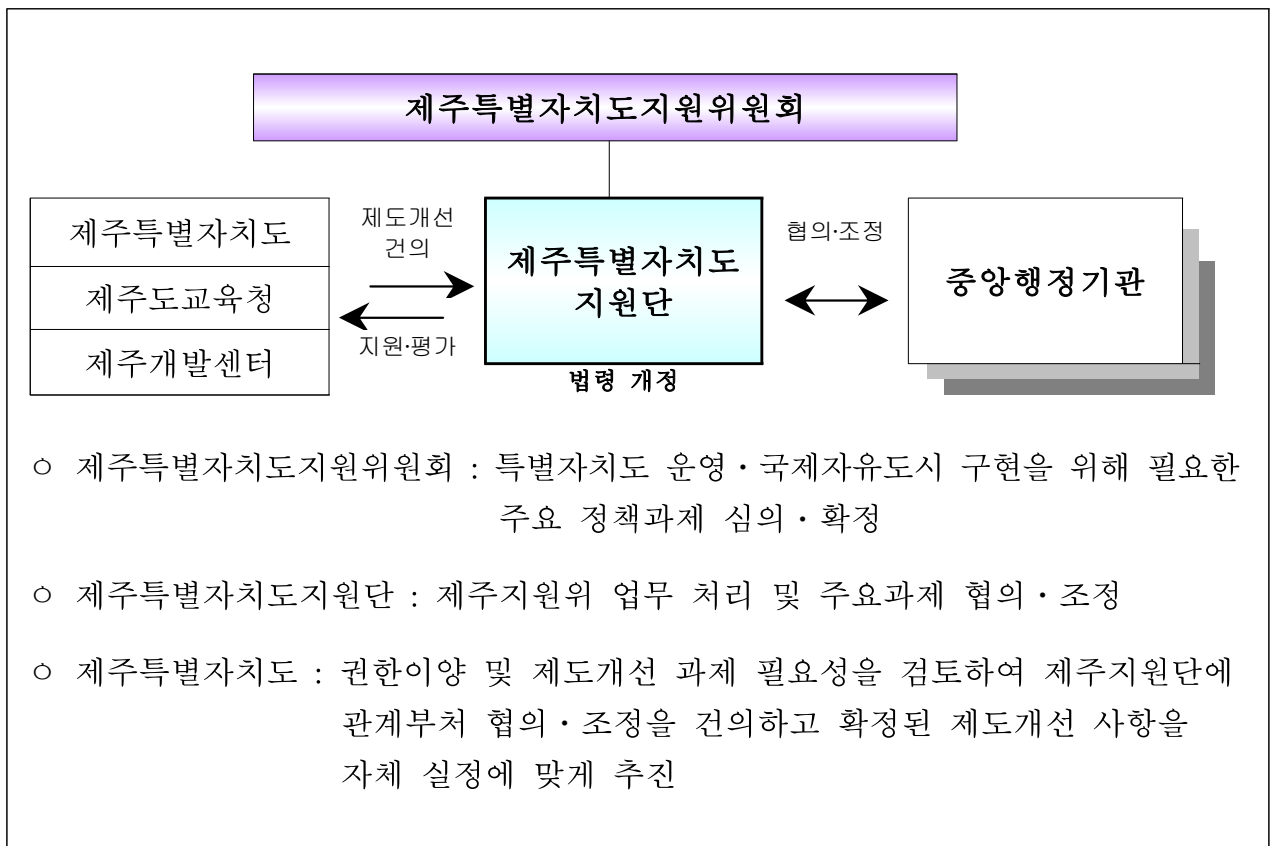
< 세월호지원단 운영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 대책별 과제 추진(소관 부처) → 이행상황 자체점검(소관 부처) → 이행상황 종합 점검(국조실) → 실무점검협의회(사회실장 주제) 및 점검협의회(국조실장 주제)에서 점검·보완(국조실) →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소관 부처) →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평가에 반영(국조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 △ 관계 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 △ 3대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 점검, 부처간 조정 등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 △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국방부, 여가부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 △ 국조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실무점검협의회

(사회실장 또는 추진단장 주재)

- △ 국조실,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 등

* 점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현안조정회의(총리 주재)등에 상정하여 대책 마련

사업명
세종시지원단 운영 (7035-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시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종시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세종시지원단 운영	282	317	317	314	314	△3	△0.9

4.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심의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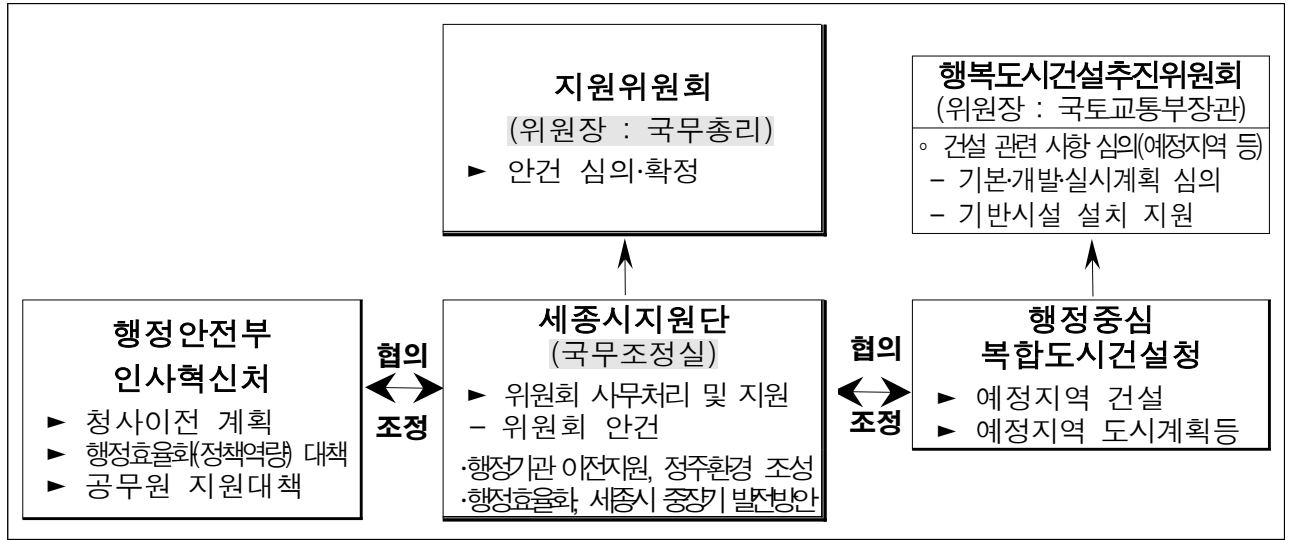
○ 추진경위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0.12.27)
-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16)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6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국정과제('17.8) :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70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운영	1,136	2,153	2,153	2,254	2,254	101	4.7

4.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홍보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11.27 전부개정안 시행)

- ODA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구성(법 §7①·⑤)
- 위원회 업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법 §9①)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법 §16)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13)
-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운영(법 §18)
- ODA 관련 전문인력 양성(법§19)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법 §20)
- ODA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법 §2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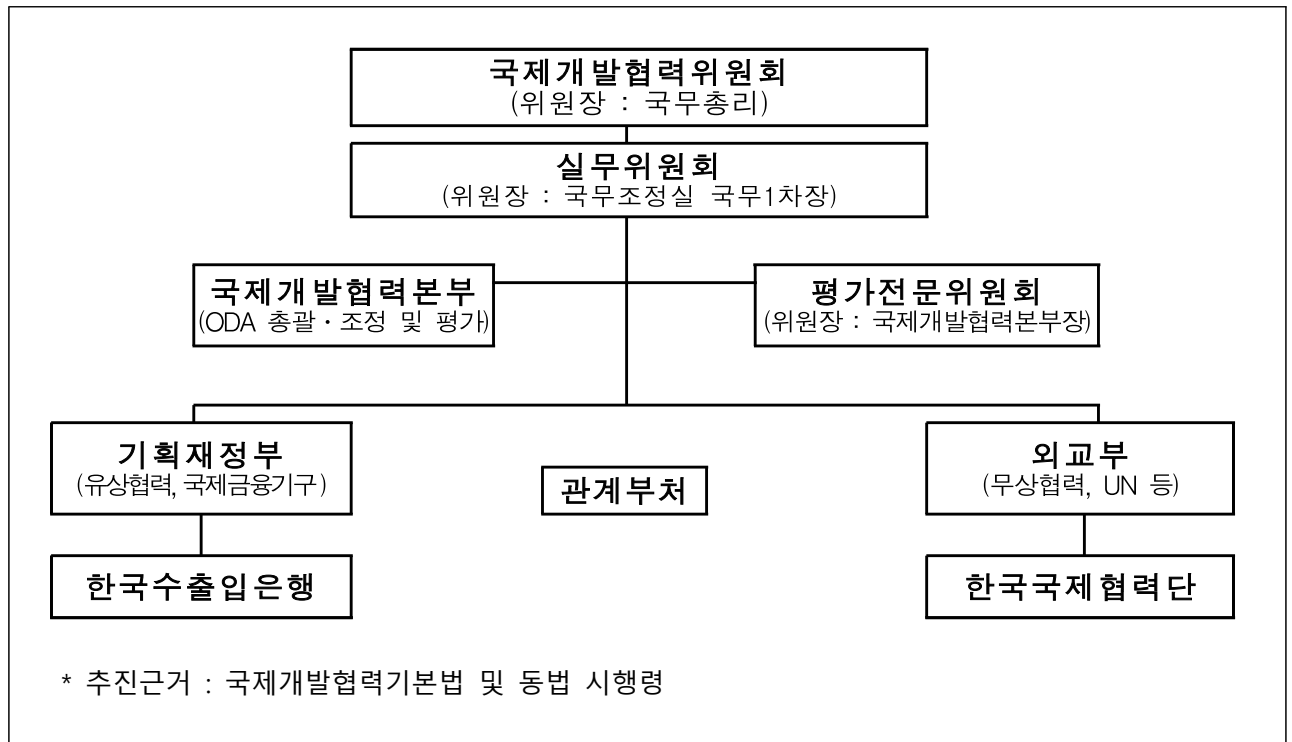
○ 추진경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298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 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평가소위원회(現평가전문위원회, '20.11~)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09.11)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0.7.26)
- 제1차('10.12) 및 제2차('15.1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18.6.2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21.2.25)
 - ※ 주요 개정내용: 전략 수립 사업 연계조정 및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촉진 기능 강화, 사무기구 설치 근거 신설 등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21.1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60	173	173	171	171	△2	△1.2

4.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 *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 추진경위

- 국무조정실 내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 8. 1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6.2.12. 시행),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62호, '16. 2. 11. 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16. 2. 12.)

- 국정과제(4-2-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부·행자부·국토부)) 이행을 위한 전담 운영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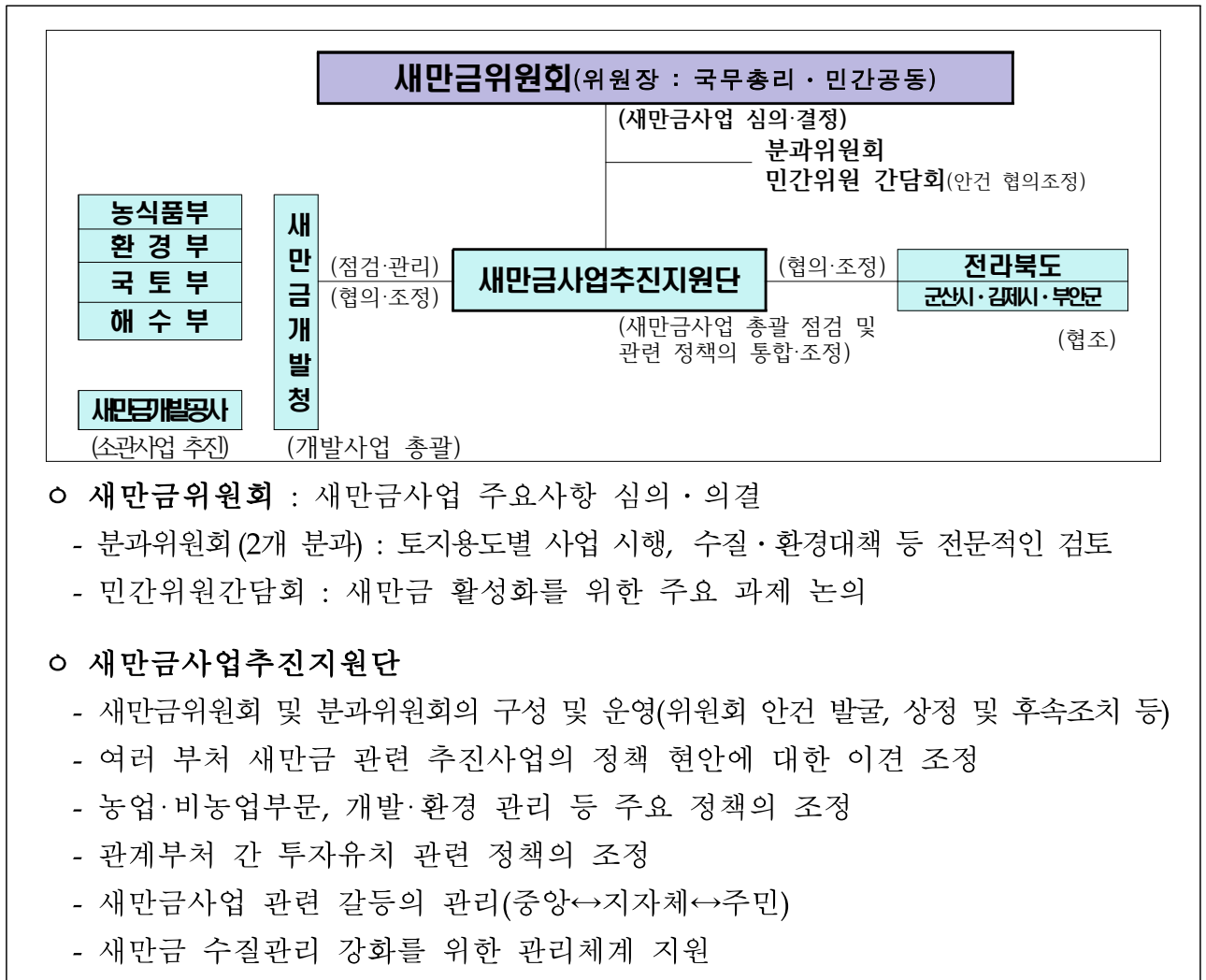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7035-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일반행정 정책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5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2,298	3,159	3,159	3,001	3,001	△158	△5.0

4. 사업목적

- OECD 선진국의 제도·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 등에게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도국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ODA)
 - (기본경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조세정책) 아태지역 비회원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진조세제도 전파와 정책경험 공유
 - (경쟁정책)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및 판사 등 대상으로 선진 경쟁법제 및 사례

전과

- (공공관리정책) OECD 회원국의 우수정책 사례를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과 공유 하고 역내 공무원을 초청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 (사회정책) 보건·사회·연금 분야별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등 선진 복지정책 전과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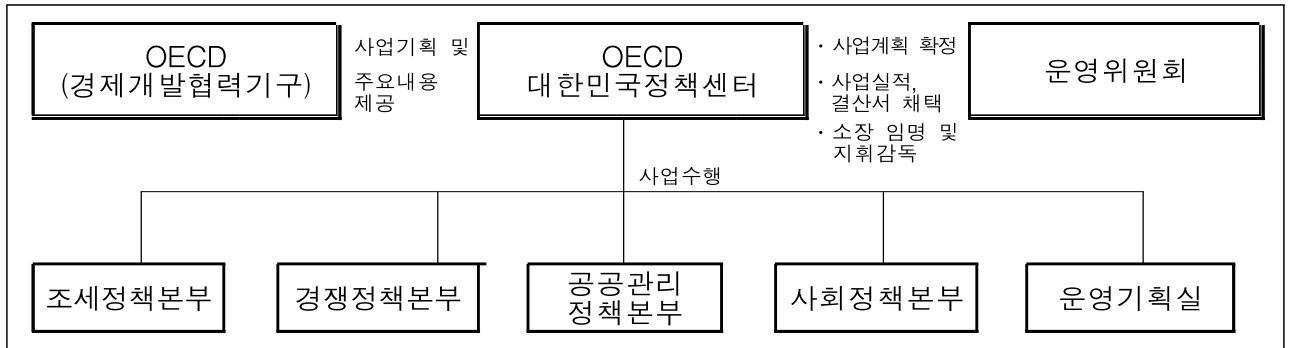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 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9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년4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7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9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명칭 변경
 -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 523호, 2008.10.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국제부담금)	출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3,001	100.0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7035-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정책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2,545	3,065	3,065	4,122	4,122	1,057	34.5

4. 사업목적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청년과의 소통 업무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2(청년정책조정실장)

제10조2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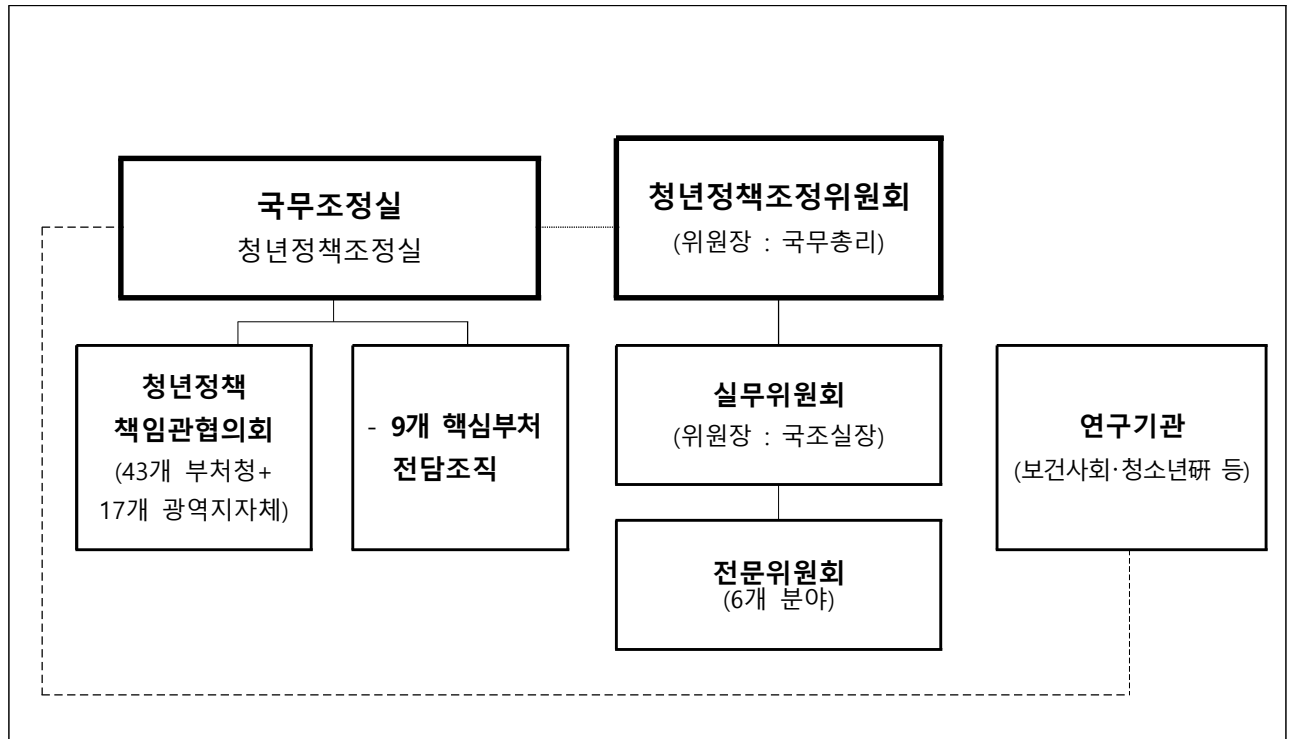
- 청년들의 높은 실업, 힘든 주거여건,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안)**」 발의('18.5.21)
 - * 여·야 의원 18인 참여, 위원장 이명수(한) 및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및 사무국 설치 등
- 정부내 협의를 통해 국조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는 추진체계* 확정('19.5.2)
 - * (靑) 청년소통정책관 (政)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 및 사무국(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內 청년정책 TF 설치('19.6.3)
 - * 법 통과 이전이라도, 범정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추진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출범('19.7.30)
-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공포('20.2.4) → 시행('20.8.5)
 - * 법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주재)의 사무국 역할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생활SOC추진단 운영 (7035-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생활SOC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8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생활SOC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생활SOC추진단 운영	1,030	1,156	1,156	1,150	1,150	△6	△0.5

4. 사업목적

-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SOC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1.16)

② 추진경위

- VIP,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지시('18.8.6, 수보회의)
 -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 '19 정부예산에 생활SOC 투자 확대편성('18년 5.8→ '19년 8.6조원)
 - * 관계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8.27) 발표
- VIP,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지시(9.4, 구산동 현장방문)
 - *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필요”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총리훈령, 11.16)
 - ⇒ 국무조정실 내 ‘생활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 설치·운영 中
- 생활SOC 관련 국정과제 실천과제 신설(78-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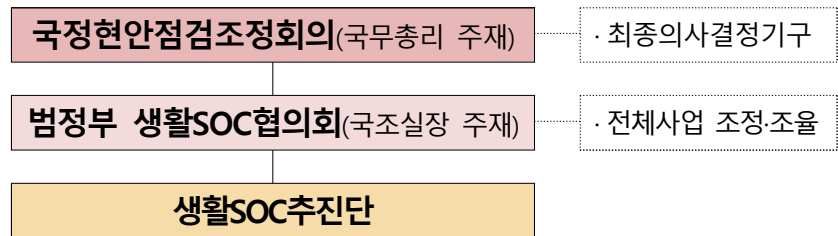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생활SOC 추진체계>

- ◇ (정책협의회)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자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
- ◇ (생활SOC추진단)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설치
 - * 국무조정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총 20명 구성
 - (역할) 생활SOC 중장기계획 수립·이행점검, 생활SOC 협의회 운영, 부처별 생활SOC 사업 조정·지원, 지역 내 협력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 등



사업명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7035-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50탄소중립 위원회 사무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	-	- (이체 4,113)	6,806	6,806	6,806	-

4. 사업목적

- 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외계층·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 제3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 제8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제9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
- 제10조(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사무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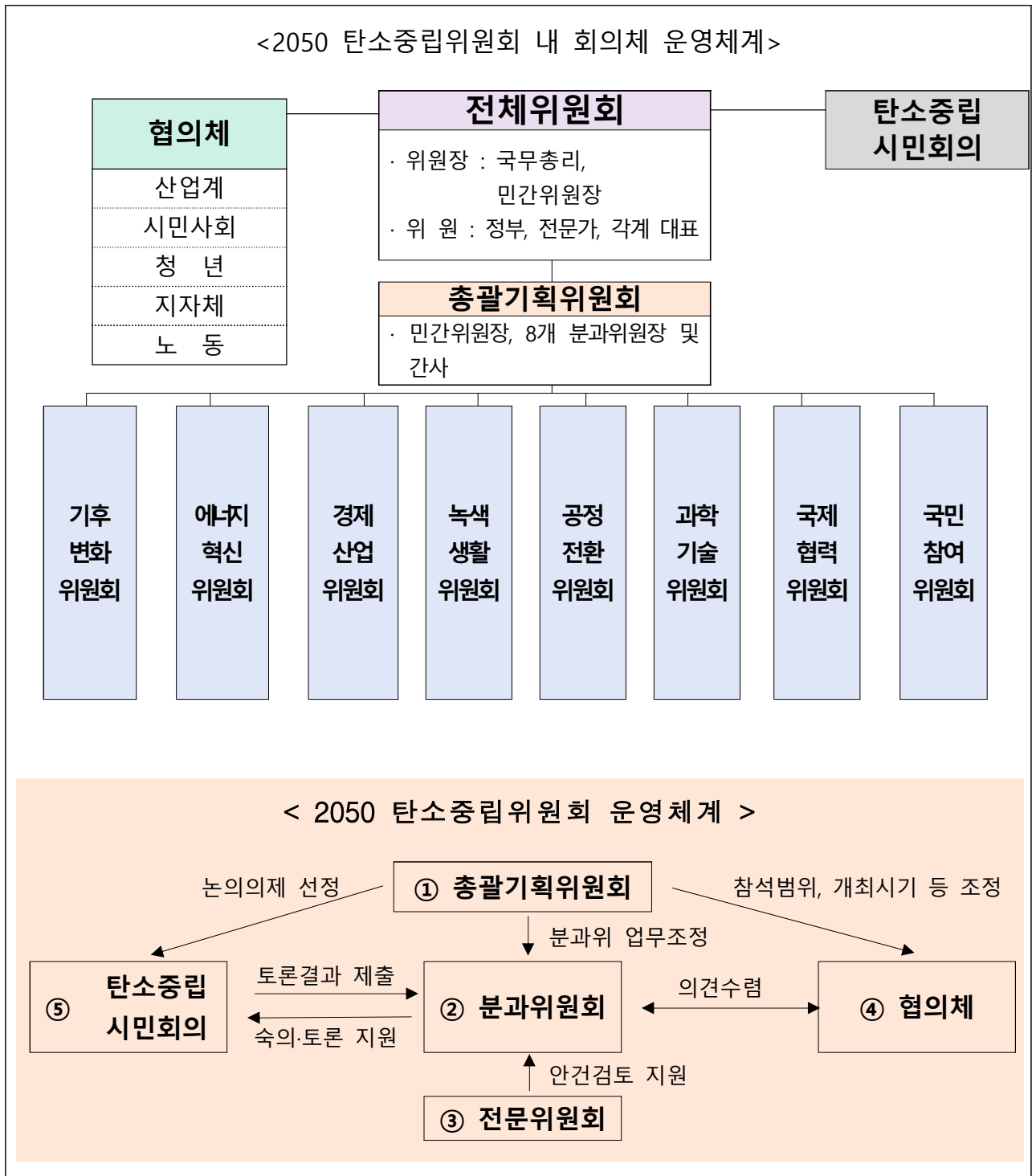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대통령, '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10.28)
 - *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 대통령 주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회의 ('20.11.27)
 -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12.7)
 - *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기존조직(국조실 녹색성장지원단 등)을 개편
- 국조실 녹색성장지원단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 인력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추진준비단 구성·운영 ('20.12.21, 2국 7과 25명 체제)
-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운영 검토 ('21.1월~)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21.2.22~3.18)
-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운영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21.3.12~3.20)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21.4.5~4.15)
 - * 위원회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부여
-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차관회의 ('21.4.22)
-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국무회의 ('21.4.27)
- 국가기후환경회의 폐지령 시행 ('21.4.30)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정령 시행 ('21.5.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01	226	226	225	225	△1	△0.4

4.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
-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공
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일체감 형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㉔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다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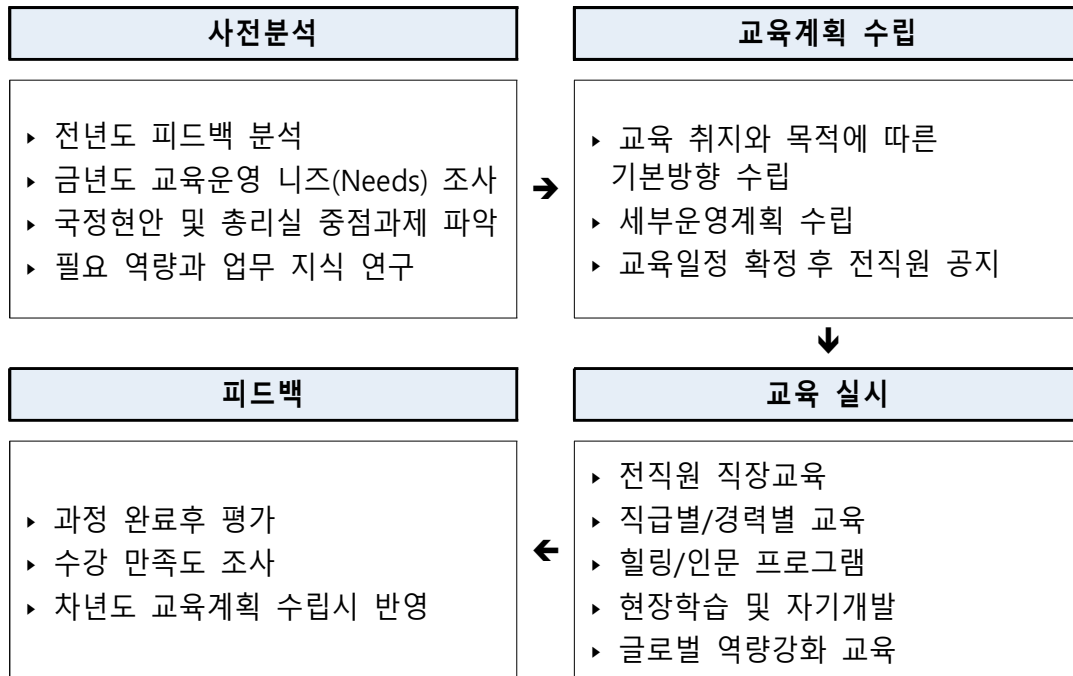
○ 추진경위

- '04.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내부 정보화(정보화) (703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내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내부 정보화	1,605	1,501	1,501	1,646	1,646	145	9.7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내 정보보안 기반 강화,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 (SW구입 및 노후장비교체)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용 SW 구입 및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 (영상회의장비 교체) 서울·세종 청사 영상회의실 간 이중화를 위한 관련 장비 추가 설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7962호, '21.3.23.)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31380호, '21. 1. 5)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훈령 제316호, '13.9.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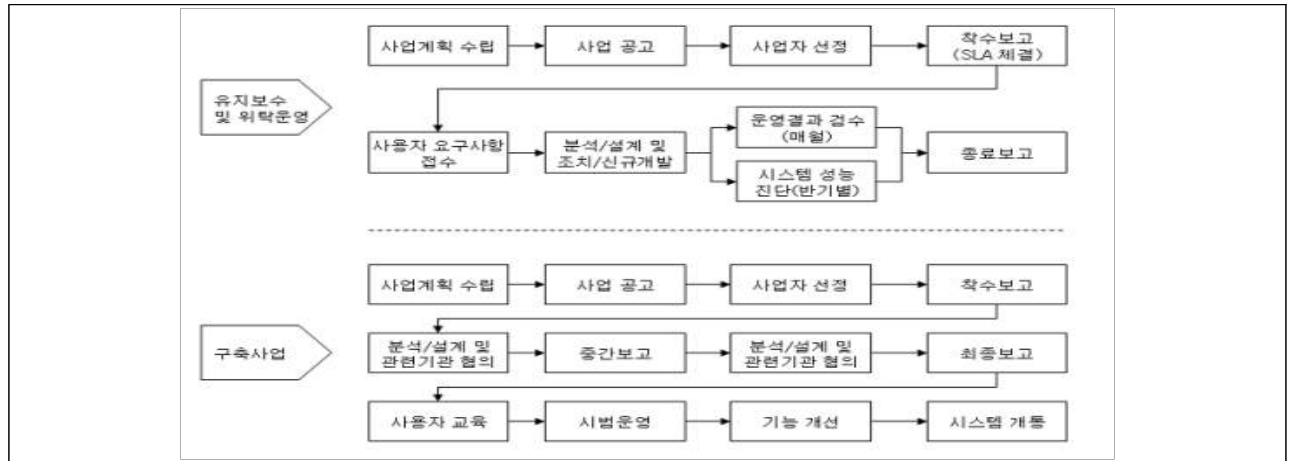
- (舊)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06.8)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7.1)
-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08.2)
- 통합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9.2)
-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10.6)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10.12)
-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11.10)
-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12.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13.12)
-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14.12)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15.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고도화 사업('16.1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17.4)
- 내부정보시스템(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20.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공직복무 관리 (70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복무관리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공직복무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공직복무 관리	596	663	663	705	705	42	6.3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534호) 제11조 (공직복무

관리관)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생략>

○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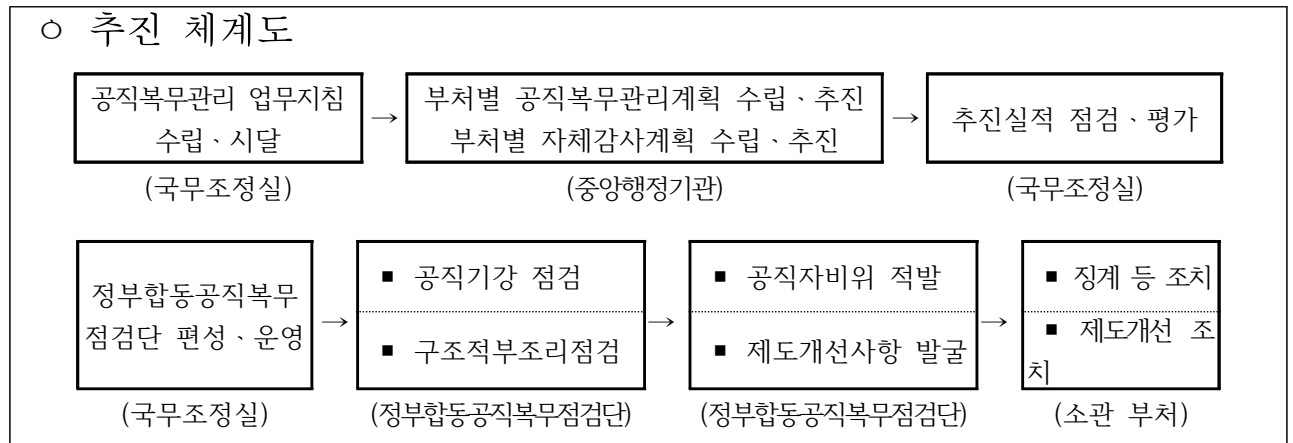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

-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 사회정화위원회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행정조정관실) 이관
 - '94.12 2국(사정총괄심의관, 예방심의관) 체제로 변경
 - '98.02 1국(조사심의관) 체제로 변경
 -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총리실 직제 개정)
- ⇒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공관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무총리 공관관리	395	400	400	400	400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 공관(세종, 서울)의 주요 건축물(주거동, 업무동, 삼청당 등)과 부대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공고 ⇒ 계약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사업명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7036-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1,708	1,801	1,801	1,801	1,801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기념품·선물비,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 |
|---|

사업명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65	283	283	283	283	-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고 내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전자정부법 제3조·4조·16조·20조
- 추진경위 : 조세심판정보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조세심판원
- 사업 수혜자 : 조세심판원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명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36-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677	813	813	416	416	△397	△49

4. 사업목적

-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패사각지대* 시정·예방
 -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 부처합동 점검체계(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를 통해,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舊부패예방감시단, 舊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5호)

② 추진경위

- ('14.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한시조직으로 출범
 -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총리훈령/'14.8.13)
- ('15.7, '16.12, '17.8, '19.12, '20.3) 지속적인 부패·부조리 근절 필요성, 점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한 5회 연장
 - * ('20.3.9)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예방 강화), 활동기한 연장(~'22.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8월~2022년 6월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 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사업명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11	590	590	596	596	6	1

4. 사업목적

-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제7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제9항)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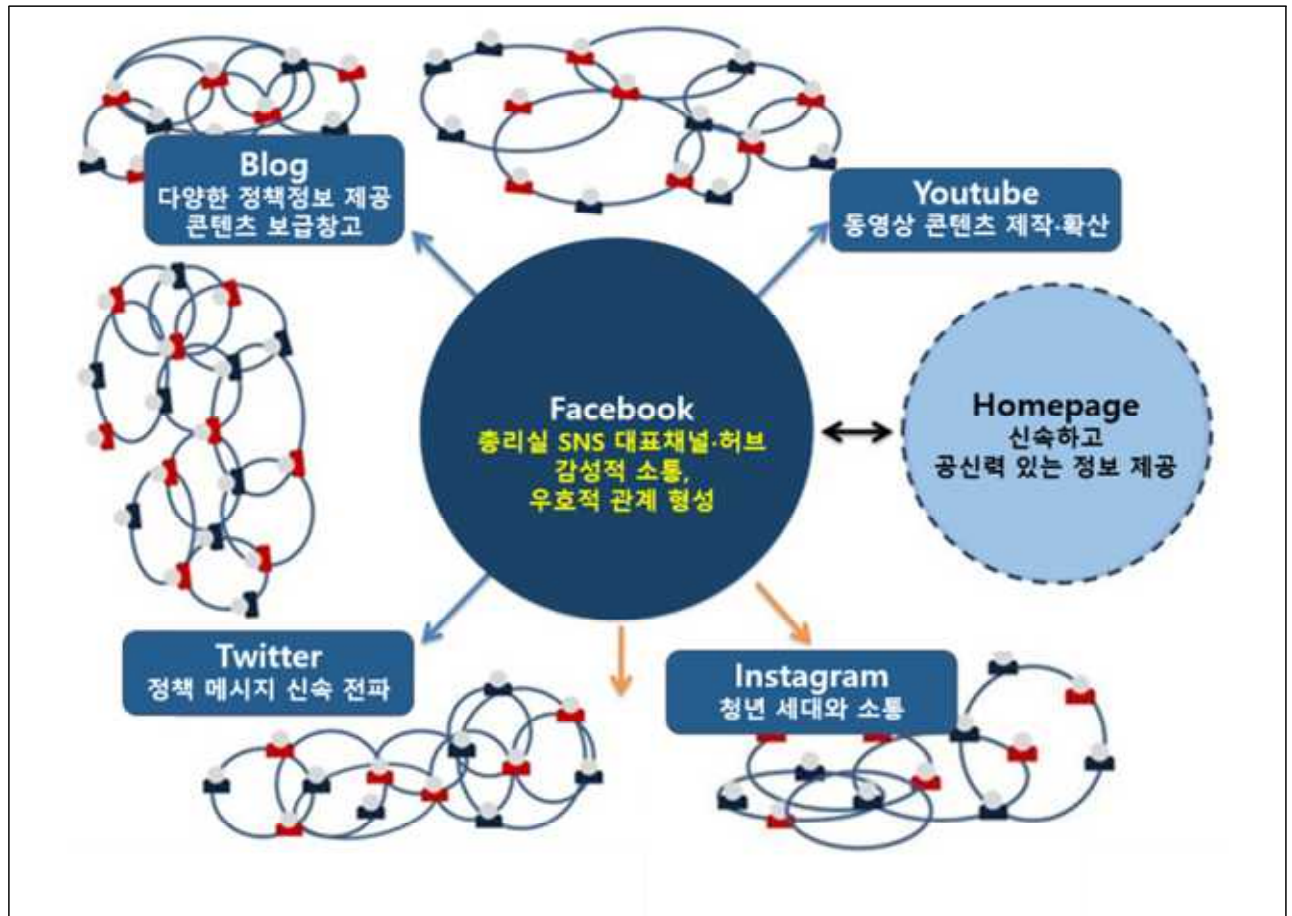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정책 소통 확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전문임기제 3명*) 확충('18.8)
- 대통령·국무총리의 적극적 정책 소통 활동 지시

-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19.1.8, 국무회의, 대통령)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20.1.28, 국무회의, 국무총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민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국회·정당 및 시민 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1,162	1,972	1,972	1,270	1,270	△702	△35.6

4. 사업목적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등 대국회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위원회(국무총리소속 심의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 국정현안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70호, '20.5.26 제정)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	보조	-	100	100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20.5, 대통령령)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8810-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국제정책대학원 사학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전출	165	91	91	306	306	215	236.3

4. 사업목적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 연금부담금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 × 3,706/9,000('21년)
- 퇴직수당부담금 : 퇴직수당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국가부담금)

-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 ① 삭제
-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 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들이 2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사립학교 교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